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**보도참고자료**	(배포) 2019. 4. 26.(금)

4.26(금) 23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비고	* 공동배포 : 산업통상자원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해양수산부, 농림축산식품부, 외교부, 원자력안전위원회	
담당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과장 최대원, 사무관 안혜리 (044-200-2379, 2380)
	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	과장 정하늘, 사무관 정지선 (044-203-4880, 4889)
	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	과장 김현선, 사무관 김현진 (043-719-2170, 2158)
	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과장 서정호, 사무관 정길수 (044-200-5610, 5618)
	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	과장 정혜련, 사무관 민동명 (044-201-2271, 2276)
	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	과장 김상욱, 서기관 박지은 (02-2100-7675, 7674)
	원자력안전위원회	과장 배순덕, 사무관 백지예 (02-397-7351, 7357)

WTO 분쟁해결기구,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

- 4.26(금) WTO 분쟁해결기구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 -

□ '19.4.26.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기구는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(수산물 포함) 수입규제조치가 「WTO 위생 및 식물위생(SPS)」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**공식 채택**하였습니다.

○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.

< 분쟁의 주요 경과 >

- '11. 3.14.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,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**수입규제조치 실시** (수입 시 방사능 검사, 일부 품목 수입금지)
- '13. 9.9.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('13.8.8.) 후 우리 정부는 **임시특별조치*** 시행
 *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
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
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(370→100Bq/kg)
- '15.5.21. 일본 정부, 우리측 조치 중 일부*에 대해 **WTO 제소**
 *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
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
- '18.2.22. WTO 패널(1심),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
 *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(차별성·무역제한성·투명성), 합치 1건(검사절차)
- '18.4.9. 우리 정부,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
- '19.4.11. WTO 상소기구(최종심),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
 *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
- '19.4.26 WTO 분쟁해결기구, **최종 판정 공식 채택**

□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,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,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,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.

○ 또한 **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**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,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**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**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.

□ 이번 판정으로 **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**됩니다.

참 고 상소 판정 요지

1 **(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)** 패널(1심)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, **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**에도 불구하고 **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**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**자의적 차별**이라고 판단하였으나,

⇨ **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함.** 즉,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함.

➡ **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**

2 **(불필요한 무역제한성)** 우리나라의 **적정한 보호수준(ALOP)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**에도, **패널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/year만 적용**하여 **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**하였으나,

⇨ **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(사고 이전 수준,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)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함.**

➡ **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**

3 **(잠정조치 여부)**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나,

⇨ **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**

4 **(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)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함**

- 다만,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'문의처(enquiry point)'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함